

CR 2004 - 0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EU "Solvency-II"를 중심으로 -

2004. 6

보 험 개 발 원

CR 2004 - 08

CEO
Report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EU "Solvency-II"를 중심으로 -

2004. 6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 외환위기시 IMF의 권고로 1999년도에 도입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 부실한 회사의 퇴출기준으로만 인식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EU가 추진중인 "Solvency II"의 작업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EU 지급여력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 첫째, 보험회사의 부실화는 계량화가 가능한 재무지표가 표출되기 이전에 지배구조,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의 문제로 야기되므로 감독당국의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함
 - 둘째, 요구자본을 최소자본과 목표자본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
 - 셋째, 지급여력제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로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으며, 동 변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수단으로는
 - 첫째, 향후에는 자산과 부채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리스크와 적정수익을 안배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임
 - 둘째, 리스크평가를 위한 내부모형의 구축과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스스로 내부모형을 통한 목표자본을 산출하여 중요한 경영지표로 활용하여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 목표자본의 수준은 높게 정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함
 - 넷째, 주식이외에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Innovative Capital)의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EU Solvency의 현황 및 문제점	2
III. EU Solvency-II Project	5
IV. 시사점	13
<별첨 1>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17
<별첨 2> Sharma 보고서 개요	19
<별첨 3> Total Balance Sheet Approach	20

I. 검토배경

- 외환위기시 IMF의 권고로 1999년도에 도입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EU방식을 우리나라의 환경¹⁾에 반영한 것으로
 - 지급여력비율을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감독상 조치수단으로 활용함
 - 동 제도를 통하여 1999년 이후 15개 생보사와 3개 손보사가 계약이전 및 M&A를 통하여 구조조정 되는 등 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재편을 촉진함
 - 또한 보험회사 역시 동제도의 도입이후 프라이싱(Pricing) 및 판매목표 수립시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리스크를 감안한 경영전략수립에 기여함

- 그러나, 동제도의 경우 부실한 회사의 퇴출기준으로만 인식되는 점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일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EU의 경우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 5월부터 "Solvency-II"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지급여력제도의 모델이 된 EU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 변화 방향의 추정 및 보험산업에 의미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1) EU의 지급여력제도중 금리리스크(책임준비금의 4%)는 수정없이 도입한 반면에 보험리스크는 생·손보 모두 보험회사의 경험실적(보험금지급을 혹은 손해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II. EU Solvency의 현황 및 문제점

1. Solvency- I 의 적용

- 현재 EU 회원국에 적용중인 지급여력제도는 1973년 “EU 손해보험 1차지침”과 1979년 “EU 생명보험 1차지침”에 도입된 제도로 아래와 같음

■ 생명보험 지급여력기준금액 = 책임준비금 기준금액 + 위험보험금 기준금액

⇒ 책임준비금 기준금액 = 책임준비금 × 4% × 재보험계수(85% 이상)

⇒ 위험보험금 기준금액 = 위험보험금 × 0.3% × 재보험계수(50% 이상)

■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금액 = Max(보험료 기준금액, 손해액 기준금액)

⇒ 보험료 기준금액 = 보험료 × 리스크계수 × 재보험계수(50% 이상)

리스크계수는 1000만 유로까지는 18%, 초과분은 16%

⇒ 손해액 기준금액 = 손해액 × 리스크계수 × 재보험계수(50% 이상)

리스크계수는 700만 유로까지는 26%, 초과분은 23%

- 1992년 제3차 보험지침 제정시 지급여력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2000년 10월 지급여력제도 수정지침(Solvency- I)을 제출하였고, EU회원국은 2004년부터 동 지침을 적용중에 있음
 - 지급여력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개별 회원국 감독당국의 조기개입 권한 확대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회원국의 감독권한 강화

- ⇒ 특정지역 리스크 고려 : 회원국은 보다 강화된 지급여력 규칙 적용 가능
- ⇒ 계약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에 조기개입권 부여

■ 지급여력기준금액 강화

- ⇒ 최소보증기금 : 300만 유로(손해보험은 종목에 따라 200만 또는 300만 유로)로 상향조정, European Index of Consumer Price에 연동
- ⇒ 보험료 기준에서 높은 계수(18%) 적용 보험료 한도(1000만→5000만유로), 손해액 기준에서 높은 계수(26%) 적용 손해액 한도(700만→3500만유로)를 5배 상향조정
- ⇒ 특정 손해보험종목(해상, 항공, 일반배상책임)의 지급여력기준금액 50% 인상

2. 현행 방식(Solvency- I)의 문제점

□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시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함

- 현행의 고정비율(Fixed Ratio : <별첨 1> 참조)방식은 보험회사의 자산/부채 보유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므로 지급여력기준 산출금액의 정당성이 떨어짐
- 고위험 자산/부채 보유회사와 저위험 자산/부채 보유회사간의 지급여력비율상 변별력이 떨어짐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음

□ 부채평가방식의 상이함에 따른 보험사별 비교가능성 저해

-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1차적으로 “보험계약준비금

(보험부채)“의 적립으로 준비하며, 이를 초과하는 지급의무는 지급여력을 통하여 보장하므로

- 부채평가방식 및 규모가 국가별/회사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급여력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²⁾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미흡

-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위험계수에 의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함

□ 정성평가(Qualitative Assessment)에 관한 제도장치 미비

- 보험회사의 파산은 재무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지급여력 비율의 악화 이전에 보험회사의 의사결정 구조 및 내부통제 문제로 야기되어짐
- 따라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파산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를 통한 조기개입권한의 확보가 필요함

2) 예를들면, 동일한 위험을 인수한 두 보험회사중 A사는 부채를 100으로 평가하고, B사는 200으로 평가한 경우, 이러한 부채평가금액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함. 즉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부채와 지급여력금액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함

Ⅲ. EU Solvency-II Project

1. Project의 주요 업무

- EU는 2005년까지 금융시장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중인 “금융 시장 제도정비 5개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 FSAP)”의 일환으로 “Solvency-II Project”를 추진함
- EU차원에서 수행중인 “Solvency-II Project”는 EU의 지급여력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2001년 5월부터 두 단계로 진행중임

단 계	주요 업무
Phase- I (2004년초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평가, 투자규제,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 · 금융권간 조화를 위하여 "Basel II"의 보험권 적용가능성 검토 ·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설계
Phase-II (2004년부터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ase- I”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체계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검토 · 지침, 규정, 해석 등 제·개정

- 현재 "Phase-II"를 통하여 부채평가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2008~200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미 완료된 “Phase- I”의 결과에 대하여
 - 현재 EU 지급여력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설계시의 고려사항과
 -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Pillar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 Phase- I 결과 : 설계시 고려사항

□ “포괄적 지급여력제도” 구축

- 유럽 보험사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작성된 “Sharma 보고서 (<별첨-2> 참조)”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한 재무적 평가로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한계가 있으며,
 - 리스크와 연관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감독당국 검토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
- 따라서 EU는 “포괄적인 지급여력제도³⁾”를 “Solvency II”의 지향점으로 삼으며,
 - 2006년 적용 예정인 “은행권의 신바젤 협약(Basel-II)”의 체계를 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기로 함

<보험권에 적용가능한 3-Pillar 접근법>

Pillar- I : 재무평가	Pillar-II : 감독 검사	Pillar-III : 시장규율
· 일정수준 이상의 지급 여력금액을 요구	· 내부 리스크관리에 대한 정성평가	· 공시 확대를 통하여 시장에 의한 통제를 유도

- 3) “포괄적 자기자본규제”라 함은 자산과 부채평가로 산출된 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단순 비교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및 의사결정과정의 건전성과 미래 재무상태 추정치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개념임, 요약하면 “Pillar- I”에서는 RBC(Risk Based Capital)식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제시하고 “Pillar- II”의 정성평가를 통하여 현재 캐나다, 미국 및 영국 등에서 도입 혹은 도입예정인 RAS(Risk Assessment System)식 감독체계를 구현하는 방식임

□ 리스크가 고려된 지급여력제도 구축

- 대차대조표(자산/부채)에 내재된 리스크가 반영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기로 함
 - EU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식의 문제점은 보험사별 자산/부채 리스크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임
 - 따라서 EU 이외의 국가에서 적용중인 **RBC**를 도입하기로 함

- 그러나, “공식기준 RBC⁴⁾” 역시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본요구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내부모형의 사용을 지급여력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함
 - 다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통일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식기준 RBC”와 병행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함

-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이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채평가 방법**이 “지급여력제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임(<별첨 3> 참조)
 - 따라서, 부채평가 방법 및 규모에 대하여 EU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로 함
 - 다만, 부채평가방법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Phase-II”에서 논의하기로 함

4) RBC제도의 대부분은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대리변수×리스크계수” 형태의 공식으로 산출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 RBC제도의 자산리스크 중 비관계사 보통주는 “주식의 장부가×0.40%”로 계산함

□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역할 확대 및 구분

- 현행 EU의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시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수단만이 존재함
- 따라서 지급여력 수준에 따른 “단계별 시정조치” 구축으로 인한 “조기경보” 역할의 강화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파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설계하기로함

<요구자본⁵⁾의 단계별 역할 및 산출방식>

역 할	요구자본 수준 및 산출방식
시장참여 제한 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여력이 동 조치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파산확률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 · 감독조치수단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요구자본 산출방식은 단순하고 객관적이어야만 함 · 현행 EU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미국 RBC의 “감독당국(Authorized) 및 강제(Mandate) 통제수준”
조기경보 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부도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수준임 · 강력한 제재수단보다는 심층적인 검사와 단계적인 경영개선 조치가 필요함 · 보험사의 내재된 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므로, 공식기준의 RBC의 사용은 적합치 않음
의사소통 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확률이 거의 “0”인 수준으로 감독당국의 개입이 없어도 요구자본수준으로 회복가능한 수준임 · 감독당국과 협의가 시작되는 기준이 되며, 보험사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임

5) 통상 타 금융권에서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요구자본(Required Capital), 지급여력금액은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으로 명명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특성에 맞게 사용하겠음

□ 국제기구와의 조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은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의 분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짐
 - 두 회계원칙의 분리는 보험사의 관리부담을 가중시키며, 통일된 기준 유지시 감독당국은 회계감사로부터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 별도의 감독회계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림
 - 따라서 향후의 감독회계⁶⁾는 일반회계의 기초위에서 추가정보 및 단순한 재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⁷⁾
- 국제감독관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의 보험계약준비금 평가, 감독체계에서 계리사의 역할, 지급여력통제수준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된 작업⁸⁾은 “Solvency II”의 향후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또한 국제계리사회(International Actuarial Association)의 리스크측정방법 연구⁹⁾ 역시 “Solvency II”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의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6) 현재 EU는 미국처럼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계지침(Insurance Account Directive(91/674/EEC)이 “감독체계”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음

7) 국제회계기준이 감독원칙과 상당히 달라져 감독회계 작성을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재작업이 필요한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음

8)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IAIS)의 “Insurance Core Principles”를 참조

9) 국제계리인회(IAA) “Insurer Solvency Assessment Working Party”의 “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 DRAFT, 2004. 1” 참조

3. Phase- I 결과 : Pillar별 개선사항

□ "Pillar- I : 요구자본 산출"의 개선사항

○ 보험계약준비금 평가 개선사항

< 손해보험 >

- 감독목적상 보험계약준비금의 적립수준을 통일하기로 함(예를 들면 향후 손실액의 75% 등)
 - 이 경우 "Pillar-II(감독당국의 검사)"에서 준비금적립의 적정성 평가가 필수적임
 - 적립수준은 추후 논의하며, 평가기법 및 방법은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기로 함
-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간주하지 않으나, EU의 감독상 손금산입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동 준비금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함

< 생명보험 >

- 생명보험 보험계약준비금의 평가는 현행의 EU지침의 내용을 기본으로 함(즉, 영업보험료식 평가방법)
 - 다만, 모호한 부분(평가년도 or 발행년도¹⁰)및 할인을 설정¹¹)과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은 추후 진행하기로 함

10) 발행년도방식은 보험계약 인수시점의 가정을 향후 준비금 추정시 계속 사용하는 반면, 평가년도방식은 준비금 평가시마다 가정을 바꾸어 재평가함

11) 현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위험수익률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현행 EU지침에서는 2가지 선택사항(시장금리 혹은 보험사의 자산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음

○ 요구자본의 이원화

- 목표자본과 최저자본으로 이원화하기로 하였으며, 두 요구자본은 보험사의 의무사항이며,
- 차별화된 감독 조치사항의 개발이 필요함

< 목표자본(Target Capital) >

- “조기경보 조치기준”으로 목표자본은 낮은 파산확률을 보장하는 경제적자본으로 정의함
 - 따라서 보험사별 특성 및 노출된 모든 리스크를 반영/계량화하여야 함
- 요구자본 산출은 EU차원의 표준방법을 사용하기로 함
 - 측정기간, 신뢰구간 및 계량화 방법 등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함
 - “국제계리인회”의 작업결과를 참조로 작성하기로 함
 - 감독당국의 인증을 거치는 경우 회사 내부모형의 사용도 허락하기로 함

< 최저자본(Minimum Capital) >

- “시장참여 조치기준”으로 지급여력이 동 금액 이하인 경우 파산확률이 매우 높음
 - 감독당국의 강력한 시정조치 수단이 수반됨
- 따라서 요구자본 산출은 모호함과 주관성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단순하고 객관적인 방식이 적합함(단순한 공식기준 RBC)

□ "Pillar-II : 감독당국 검사"의 개선사항

- 보험회사의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함
 - 우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원칙의 제정을 통하여 보험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내부모형의 인증기준, 보험사 현장검사(on-site inspection) 적용기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개별보험사의 특성에 맞는 검사방법을 개발하기로 함

-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권한 및 감독정책을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감독정책 전반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기로 함

- 금융의 종합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그룹의 감독방향과 금융권역별 감독주체간 역할분담에 관한 모형을 작성하기로 함

□ "Pillar-III : 시장에 의한 통제"의 개선사항

- 감독정보에 관한 시장공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음
 - Pillar I 과 II의 상세한 내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감독관협의회 및 Basel II의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함
 - 다만, 보험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며,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시제도를 구축하기로 함(즉, 감독조치사항의 단순 공시는 해당보험사를 더욱 악화시킴)

IV. 시사점

1. 국제적인 동향

□ 향후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도	주요 변화 사항
2004	· EU의 Solvency-I 시행
2005	· EU 상장사 국제회계기준 적용,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 완성
2006	· 은행권 신바젤협약(Basel-II) 적용
2008	· 국제보험회계기준 완료(2단계 완성)
2009	· EU의 Solvency-II 완료
2010	· EU 국가별 Solvency-II의 적용
2012	· 국제보험회계기준 적용 국가의 확대

□ 이미 살펴본 EU "Solvency-II"의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이원화(최저자본과 목표자본)**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조기개입과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
- 요구자본 산출은 현재의 단순한 고정비율방식에서 보험회사 **리스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킴
- 비계량적인 요소인 보험회사 내부 의사결정구조 및 리스크 통제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하며, 이러한 감독권한의 강화는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투명하게 공개함

- “공정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은 국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
 - 국내의 경우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발행년도 방식의 원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가위주의 공정가치 회계 도입 시 손익 및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생/손보 모두) 평가시 최선의 추정치와 역편차충당금(PAD :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함(현재 국내 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최선의 추정치만이 존재함)

-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Basel-II의 적용은 보험감독 환경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요구자본 산출시 각 금융회사의 내부모형을 인정하는 제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제고시키는 요인임
 - Basel-II를 기초로 하여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평가방법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2. 국내 지급여력제도의 개선방향

- 올바른 지급여력(자본 및 잉여금)금액의 산출은 재무건전성 평가의 초석이므로, 부채평가방식의 개선이 선행 요건임
 - 생명보험의 경우는 자산적정성분석을 통한 ALM리스크의 반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매년 재평가를 하는 영업 보험료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손해보험은 통계적 추정방식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역편차충당금(PAD)의 반영이 필요함
 - 보험부채와 지급여력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보험부

채 적립수준에 관한 보험산업 내부의 의견수립이 필요함

-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 타 금융권 및 외국의 보험산업의 경우
가용자본의 **순도(Quality)**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 기본자본과 보완자본(후순위차입금, 상환 및 누적 우선주 등)으로 구분한 후, **보완자본을 일정 한도**(예를 들면, 기본자본보다 클 수는 없음)까지만 지급여력으로 인정함
 - 다만,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도입이 예견됨**

- 요구자본의 산출방식은 **리스크 민감형으로 전환될 것이며, 최저자본과 목표자본으로 이원화**
 - 최저자본의 산출은 단순하고 투명한 RBC방식이 선호되고,
 - 목표자본은 시나리오 분석 및 내부모형의 사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수준은 많은 논의가 필요함

3.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험업계는 향후 국제적인 추세 및 감독당국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첫째는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
 -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는 판매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운용 중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상관없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정해지나

- 향후에는 자산과 부채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리스크와 적정수익을 안배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함

□ 둘째는 리스크평가를 위한 내부모형의 구축과 활용

-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부모형을 통한 목표자본(경제적 자본)을 산출하여 중요한 경영지표로 삼고
- 가격결정, 상품판매 및 자산운용 전략 등의 의사결정 수립 시 내부모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셋째는 지속적인 손익위주의 경영 필요

- 장기적으로 정책·감독당국은 목표자본을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현재의 잉여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본확충 방안의 검토

- 채권시장의 지속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주식이외에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¹²⁾(Innovative Capital)의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도 검토함

12) 신종증권은 회계상 부채로 기표되나, 이자지급을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지연시킬 수 있으며, 강제화된 만기가 없으나, 발행자에게 조기상환 옵션이 존재하는 증권임. 또한 채무변제는 우선주와 비슷한 순위를 갖고 있으며,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보험사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음

<별첨 1>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확정 비율(Fixed Ratios) 방식

-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대표값에 대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임
 - EU 방식의 손해보험 모델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며, 생명보험 모델은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을 대표값으로 사용함
- 장 점 : 적용이 쉬우며, 주관성이 배제됨
- 단 점 : 산출된 요구자본에 대한 명확한 설명(근거 제시)이 불가능하며,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된 리스크가 제한적임

□ 리스크기준 자본금(Risk Based Capital: RBC)

- 리스크를 나타내는 대표 변수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하여 요구자본으로 사용하는 점은 확정비율(fixed ratios)방식과 동일하나
 - 포함되는 리스크의 범위나 산출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
 - 자산 리스크, 신용 리스크, 보험 리스크 등이 보다 정교하고 수리적인 방식에 의해 통합됨
- 장 점 : 확정비율방식에 비해 더 많은 리스크 요소들이 포함되고, 단순하게 주관성을 배제하면서 적용이 가능
- 단 점 : 확정비율 방식과 같이 산출된 요구자본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우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리스크들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시나리오 기준 방식(Scenario-Based Approaches)

-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과 대차대조표 투영을 통하

여 요구자본을 산출함

- 시나리오는 미래 손실,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 재난적 손실, 인플레이션, 이자율, 투자 수익 등의 다양한 집합으로 구성됨
- 캐나다의 DCAT(Dynamic Capital Adequacy Test), 영국의 DFA(Dynamic Financial Analysis), 미국의 자산적정성 분석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확정비율이나 RBC에 의한 요구자본에 추가적으로 적용됨
- 장 점 : 산출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리스크들의 적용 범위 및 상호작용이 반영됨
- 단 점 : 결과가 시나리오에 의해 임의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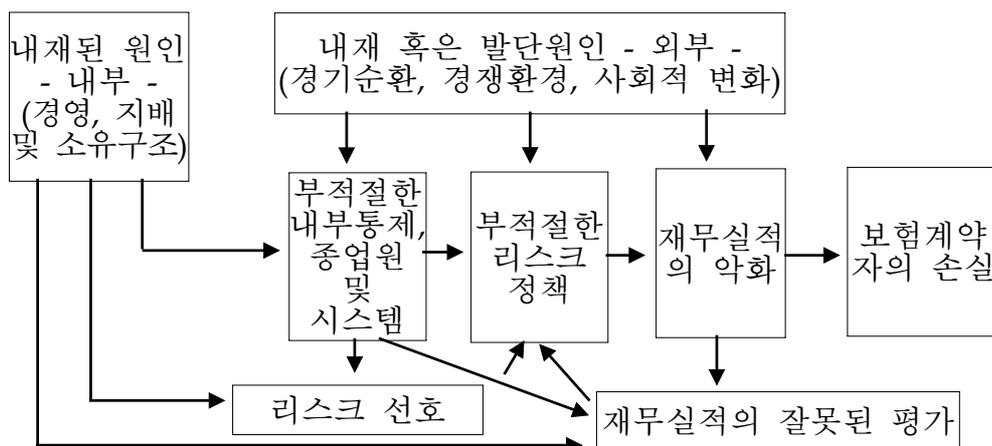
□ 확률론적 방식(Probabilistic Approaches)

- 시뮬레이션 과정상에서 통계적 분포로부터 구해진 리스크 변수들의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즉, 수천, 수만번의 시나리오분석을 수행)
- 장 점 : 정교한 모델이 적용되므로 리스크들간의 상호작용이 반영되며, 재보험과 헷지등 내부 리스크 관리과정을 강화할 수 있음
- 단 점 : 산출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방대한 데이터 및 비용이 필요함

<별첨 2> Sharma 보고서¹³⁾ 개요

- 요구자본은 감독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며, 감독당국은 부실화의 예방 및 치유기능을 가진 일련의 감독수단들이 필요함
- 부실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인과사슬(Causal Chain)의 분석이 효율적인 감독을 가능케 함
 - 부실화의 명확한 원인은 잘못된 리스크 정책, 외생요인 및 이로 인한 실적의 악화이나
 -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면 “내재된 내부원인”이 존재함, 즉 경영자, 주주, 외부감사인과 관련된 문제임(예를 들면 전문성의 부족, 성실성의 부족, 이해의 상충, 그룹차원에서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등)
 - “내재된 내부원인 → 부적절한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과정 → 부적절한 리스크 정책 → 보험사는 외생요인에 취약해짐 → 재무실적의 악화 → 보험계약자의 손실”로 이어짐
- 따라서 “Pillar- I”의 재무평가는 보험사의 부실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독방안(정성평가)의 수립이 필요함

< 리스크 Ma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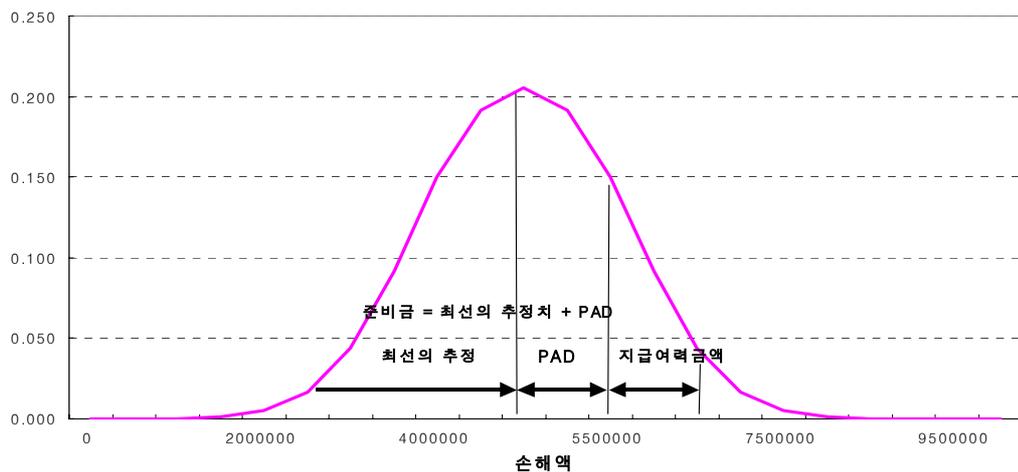


13) EU의 요청으로 영국 금융감독청의 Paul Sharma가 주도한 "유럽감독관협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2002년 12월)

<별첨 3> Total Balance Sheet Approach¹⁴⁾

- EU는 지급여력제도의 정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로 함
 - 보험계약준비금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회사와 낙관적으로 평가한 회사에게 동일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함
 - 따라서 EU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보험회계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부채와 지급여력의 역할 구분을 아래의 그림을 통하여 설명하면, 보험계약준비금의 PAD를 통하여 향후 손해액 변동성의 x%(호주의 경우는 75%로 설정)를 준비하며
 - 지급여력금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y%(통상 1년 이내에 파산하지 않을 확률 99.5%)의 안정성을 확보함

보험계약준비금과 지급여력금액의 역할



14) 국제계리인회에서 최근의 보고서(A Global Framework for Insurer Solvency Assessment, 2004.1)를 통하여 주장한 방식으로, 보험회사의 Solvency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금액에서 회계상 기표된 부채금액을 차감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채평가방법(보험회계)의 상이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임

CEO Report 2004-0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발행일	2004년 6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박 상 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부 리스크관리팀(☎368-4105)으로 하여 주십시오.